

『國有地調查書(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와 작성 주체

박 성 준 *

-
- | | |
|------------------------------------|-----------------------------|
| 1. 머리말 | 3. 『國有地調查書(抄)』 궁방전 「별표」의 성격 |
| 2. 『國有地調查書(抄)』 궁방전 「별표」의 작성 시기와 주체 | 4. 맷음말 |
-

초록: 『國有地(抄)』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둔토·궁방전·陵園墓位田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철이다. 그런데 제목에 ‘抄’라고 부기하였듯이 『國有地(抄)』는 어떤 원 자료로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 모은 문서철이며, 『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의 작성 주체와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國有地(抄)』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 문서철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와 작성 주체를 살펴보면 토지 성격별로 작성 시기와 주체가 달랐다. 『國有地(抄)』 둔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시기는 1914년과 1915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臨時財產整理局이었다. 황실 재산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임시재산정리국이 국유화된 1사 7궁과 慶善宮 장토 및 능원묘위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였던 것이다.

임시재산정리국은 1907년 각宫事務整理所에서 작성한 궁방전과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 정보뿐 아니라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와 아울러 누락된 궁방전까지 추가로 파악하였고,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궁방전 정보까지도 일부 반영해 작성된 궁방전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한 조사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도장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모든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기본적으로는 도장 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권을 환수하기 직전의 도장 양상을 반영한 정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제목에 ‘抄’를 부기했는데, 이 ‘抄’의 의미는 특정 항목에서 일부 내용만을 뽑아 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부에서 국유지와 관련된 특정 항목 곧 둔토·궁방전·능원묘위전의 항목만을 뽑아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황실재정이 국유화된 직후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임시재산정리국이 작성한 1사 9궁의 궁방전 전반의 내용을 포괄한 문서인 것이다.

핵심어 : 『國有地調查書(抄)』, 宮房田, 導掌, 臨時財產整理局, 各宮事務整理所

1. 머리말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國有地調查書(抄)』(KO 중B13G 31: 이하 『國有地(抄)』)는屯土의 소재지와 기원, 宮房田·陵園墓位田의 소재지, 결수, 두락수, 기원 등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철로 둔토와 궁방전 등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國有地(抄)』는 특정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別表’라는 이름을 부여한 총 57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¹⁾ 57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토지의 성격별로 보면 둔토, 궁방전, 능원묘위전으로 구분된다. 궁방전과 능원묘위전 관련 별표는 2개이며, 나머지 55개의 별표는 둔토와 관련된 것이다.

둔토·궁방전·능원묘위전을 기록한 용지의 관심에 ‘朝鮮總督府中樞院’이 인쇄되어 있어 『國有地(抄)』를 작성한 기관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목에 ‘抄’를 부기하였듯이 『國有地(抄)』는 어떤 원 자료로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 모은 문서철이다. 원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필사한 기관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이지만, 『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의

1) 『國有地(抄)』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영준, 2013 「대한제국기 역둔토 통계와 활용 방안-『國有地調查書(抄)』의 재검토」 (손병규·송양섭편)『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참조.

작성 주체와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國有地(抄)』를 처음 소개한 김재호는 『國有地(抄)』에 기록된 궁방전 「별표」와 관련 문서의 정보를 참고해 궁방전 「별표」에 기록된 정보의 대상 시기가 모두 동일 시점의 자료는 아니지만 1907년을 하한선으로 한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國有地(抄)』의 궁방전 관계 자료는 一司七宮 및 慶善宮의 폐지 이후 各宮事務整理所, 臨時財產整理局, 度支部 財務監督局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臨時土地調查局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 당국이 국유지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작성한 원 문서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1915년 이후 어느 시기에 舊貫調查의 일환으로서 필사 또는 정리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²⁾

김재호는 『國有地(抄)』의 대상 시기는 1907년을 하한선으로 하며, 원 자료의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김재호는 『國有地(抄)』의 궁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파악했지만, 『國有地(抄)』 전반을 검토한 연구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다.³⁾

기존 연구에서는 『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의 작성 시기와 주체를 토지 성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검토했으나, 『國有地(抄)』의 토지 성격이 둔토, 궁방전, 능원묘위전으로 구분되었듯이 원 자료의 작성 주체 또한 토지 성격별로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의 검토를 통해 『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와 작성 주체,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國有地調查書(抄)』 궁방전 「별표」의 작성 시기와 주체

기존 연구에서는 『國有地(抄)』의 바탕이 된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15년이며

2) 김재호, 1997 「한말 궁방전의 지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258~262면.

3) 조영준, 앞의 책, 363면.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일 것으로 추론하였다.⁴⁾ 그런데 이는 『國有地(抄)』 둔
토 「별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1〉 둔토 「별표」의 비교⁵⁾

별표	도명	군명	屯名	비고
摠戎屯	平南	永柔	德池屯	원래는 糧餉廳에 속했지만 肅宗朝 癸丑年(顯宗朝가 아닐까 距今 241年)에 移屬되었다
訓鍊屯	江原	高城	三日浦屯	癸酉年(距今 41年)에 罷止되었다
禁屯	漢城	東部	燔硝廳基垈	乙丑年(距今 50年)에 農圃로 移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國有地(抄)』 둔토 「별표」의 비교 항목에는 지금
부터 몇 년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어 원 자료의 작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摠
戎屯의 경우 원래는 糧餉廳에 속했지만 肅宗朝 癸丑年에 이속되었다고 하였다. 그
런데 이 시기에 대해 지금부터 241년 전이라고 하면서 현종조가 아닐까하고 의문
을 표시하였다. 속종 대에는 계축년에 해당하는 간지가 없고, 계축년으로는 현종
14년(1673)이 확인된다. 167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摠戎屯 정보의 작성 시점
은 1914년이 된다. 1914년에 총용둔 「별표」를 작성하면서 참조한 자료에는 ‘肅宗朝
癸丑年’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연도를 환산한 결과 현종조에 해당했기 때문에 의문
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다른 둔토도 환산해 보면 訓鍊屯의 癸酉年은 1873년이고 작성 시기는 1914년이
된다. 禁屯의 乙丑年은 1865년으로 작성 시기는 1915년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 구명
한 것처럼 『國有地(抄)』 둔토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가 1914년과 1915년인

4) 김재호, 앞의 책, 262면; 조영준, 위의 책, 363면.

5) 둔토 「별표」의 비교

별표	備考
摠戎屯	元ハ糧餉廳ニ屬セシカ肅宗朝癸丑年(顯宗朝カ距今241年)移屬セリ
訓鍊屯	癸酉ノ年(距今41年)罷止セリ
禁屯	乙丑年(距今50年)農圃ニ移屬セリ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둔토 「별표」의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둔토 「별표」에 해당하는 것이며 궁방전 「별표」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궁방전 「별표」에도 둔토 「별표」처럼 작성 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햇수가 기재된 사례가 있다. 密陽郡 國農沼 소재 明禮宮 장토의 토지기원 항목에는 ‘원래 池堤였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開墾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⁶⁾ 둔토와 달리 명례궁 장토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고만 밝히고 간지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둔토의 예에 따라 1914년 또는 1915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94년 또는 1895년이 된다. 이에 따르면 명례궁에서 1894년 또는 1895년에 密陽郡 國農沼 장토를 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명례궁이 개간한 궁방전 「별표」의 다른 장토와 밀양군 국농소 장토의 개간 시기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표-2〉 궁방전 「별표」 명례궁 장토의 개간 지역과 시기

지역	지목	면적	결부수	토지기원
平澤 兩峒	畠	13石 12斗落	-	丁亥年 本宮에서 開墾
突山 金敖魚島	牟田	250石 7斗 2升落	49.729	
昌原 鹽倉坪	田畠	18石 14斗 7升落	14.398	
興海 南北川	新墾田		30.845	戊子年 本宮에서 開墾
鎮南 欲智蓮花露大社尾	田		-	
慶州 九卿堤	田	12石 12斗落	-	己丑年 本宮에서 開墾
慶州 五里坪	畠	32石 5斗 9升落	-	
慶州 將台坪	畠	51石 4斗落	-	

〈표-2〉는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에 명례궁에서 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토를 제시한 것인데, 개간 시기가 丁亥·戊子·己丑年に 집중되어 있다. 연대가 간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통해 시기를 확인해 본다.

1889년부터 1906년까지 명례궁의 捧上·上下 내역을 기록한 『明禮宮捧下冊』(奎

6) '元ノ池堤ナリシテ今ヲ距ル20年前開墾セリ'(궁방전 「별표」 密陽 國農沼 소재 明禮宮 장토의 토지기원)

19576)에는 명례궁이 起墾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明禮宮捧下冊』에 기록된 기간비용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1889년에 平澤 기간비로 1,788.7 냥, 昌原 전답 기간비로 2,000 냥, 興海 답 기간비로 9,187 냥이 지출되었다. 『國有地(抄)』에 명례궁에서 丁亥·戊子年에 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평택, 창원, 흥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887년에 작성된 『慶尙道昌原府所在鹽倉坪田畝量案』(奎 18571)이 소장되어 있는데, 양안에 기록된 畠의 두락은 374두 7승락이고, 결부수는 14결 39부 8속이다. 『國有地(抄)』에 명례궁이 丁亥年에 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 昌原 鹽倉坪 장토의 두락 18석 14두 7승락(1석=20두 환산), 결부수 14결 39부 8속과 일치한다. 1887년에 작성된 창원 염창평 양안의 장토와 丁亥年에 개간한 『國有地(抄)』의 창원 염창평 장토는 동일한 대상인 것이다.

『國有地(抄)』에 창원 염창평 소재 명례궁 장토의 개간 시기로 기재된 丁亥年은 1887년이었던 것이며, 창원 염창평 양안은 1887년에 명례궁이 해당 장토를 개간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이다. 1887년에 명례궁은 창원 염창평 장토를 개간하면서 개간 비용을 1889에도 지출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명례궁에서 장토를 집중적으로 개간하였던 丁亥·戊子·己丑年은 1887·1888·1889년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명례궁에서 ‘원래 池堤였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개간했다’는 密陽 國農沼의 개간 시점을 파악해 본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888년에 작성된 『慶尙道密陽府國農沼起墾田畝量案』(奎 18659)이 소장되어 있다. 양안에 기록된 두락 수는 田 5,235두 8승락, 畠 1,176두 6승락, 합 6,412두 4승락이었다. 이는 『國有地(抄)』에 기록된 명례궁의 밀양 국농소 장토의 320석 12두 4승락(1석=20두 환산)과 일치한다. 그리고 『明禮宮捧下冊』에도 1889년에 명례궁에서 밀양 전답 기간비로 6,823 냥을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창원 염창평 장토가 1887년에 개간되었고 같은 해에 양안이 작성되었으며 1889년에 개간비를 지출한 점과 1888년에 밀양 국농소의 기간전답양안이 작성되었고 1889년에 개간비를 지출한 점에 근거해 볼 때 밀양 국농소 장토의 개간 시점은

1888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작성하였던 시점에서 20년 전인 1888년에 장토가 개간되었으므로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 된다. 둔토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14년과 1915년이었지만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었으므로, 둔토 「별표」와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주체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가 1908년이었고, 궁방전 「별표」에 1사 7궁과 아울러 경선궁과 영친왕궁의 궁방전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에 근거해 보면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주체는 臨時財產整理局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실 재정을 장악하고 황제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⁷⁾ 일본은 황실 재정을 정리하면서 먼저 各宮事務整理所를 설치하고 1司 7宮을 폐지하였다.⁸⁾ 그 다음 황실 재산과 국유 재산을 조사하고 그 소속을 정리하기 위해 1907년 7월 4일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查局(이하 調査局)을 설치하였다.⁹⁾

황실과 국유 재산의 구분을 통해 황실 재산을 정리하려 했던 방침에서 이후 황실 재산을 모두 국유화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調査局은 국유화된 황실 재산의 조사 대상과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¹⁰⁾

— 從來 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의 一切不動產(陵園墓所屬호 中 森林及土地를 包含 흠)(밑줄: 인용자)은 國有로 移屬호야 度支部所管으로 速히 整理케 되 内部或農商工部의 所管의 歸호이 可호 者는 隨即當該官廳과 此를 協定호. 宮殿太廟의 墓址及本朝陵園墓는 依前호 宮內府의 所管으로 흠.

7) 황실재정정리는 이상찬, 1992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15: 이윤상, 1996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재호, 1997 「갑오개혁이 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8) 『韓末近代法令資料集』V(이하 『法令集』), 「布達第149號 宮內府所管 各宮事務管理에 관한件」, 1907.2.24. 국회도서관, 430면.

9) 『法令集』V, 「勅令第44號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查局官制」, 1907.7.4. 576면.

10) 『各道郡各穀時價表』(奎 21043) 2책, 「決議案」, '第18回 決議案', 1908.6.12.

調査局은 1사 7궁뿐 아니라 경선궁 소속의 부동산과 陵園墓 소속의 토지 곧 능 원묘위전도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영친왕이 1907년 9월 황태자로 책봉되면 서 영친왕궁에서 관할한 재산은 경선궁으로 이속되었다.¹¹⁾ 이후 경선궁에 이속된 영친왕궁 재산을 東宮으로 환속하도록 하였지만,¹²⁾ 이 조치는 실현되지 않았고 경 선궁에서 계속 관할하였다.¹³⁾ 따라서 국유화 대상인 경선궁 장토에는 영친왕궁의 장토도 포함되어 있었다. 궁방전 「별표」에 1사 7궁의 장토뿐 아니라 경선궁과 영 친왕궁의 장토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국유화된 황실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908년 7월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은 궁 내부에 궁내부 소관 및 경선궁 소속 재산과 제실채무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¹⁴⁾ 황실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2개의 재산정리 방침을 결정 했다. 정리 대상에는 1) 驛屯土, 2) 一司七宮 및 慶善宮 庄土, 3) 大廟基趾 및 陵 園墓位田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⁵⁾ 임시재산정리국은 역둔토의 정리 방침을 정했지만 1907년 11월 5일에 이미 역둔토의 收租가 度支部에 위탁되었기 때문에¹⁶⁾ 역둔토의 임시재산정리국 이관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역둔토는 탁지부 財務監督局에서 계속 관리하였다.¹⁷⁾ 따라서 임시재산정리국의 주요 업무는 궁방전, 궁방전의 導掌, 궁방 전 混奪入地의 조사 정리였다.

임시재산정리국의 궁방전 정리를 통해 경선궁(영친왕궁 포함) 장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¹⁸⁾

11) 『純宗實錄』 권1, 1907(즉위년).8.24.

12) 『官報』, 1907.12.28.

13) 和田一郎,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184면.

14) 『官規ニ關スル書類綴』(奎 20922), 1908.6.30.

15)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15~16면.

16) 『法令集』VI, 「奏本 經理院收租官을 廢止하고 驛屯土 · 各宮田畠園林을 派員調查하고 今年 度收租를 度支部에 委託하는 件」, 1909.11.5, 68면.

17) 김재호, 앞의 논문, 296면.

18) 경선궁의 토지 정리는 박성준, 2008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역사교육』105 참조.

〈표-3〉 경선궁(영친왕궁 포함) 장토의 황실재정정리 결과

구분	畝	田	합계	비율
國有	567畝 8700	52町 6700	620町 5400	31%
私有	892畝 5700	488町 3400	1380町 9100	69%

* 출전: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39면.

황실재정정리 결과 경선궁 관할 토지 가운데 사유지로 인정된 것이 69%, 국유지로 인정된 것이 31%였다. 그러나 이들 토지는 모두 사유지로 환급되었다. 사유로 인정된 것은 1909년 8월에, 국유로 인정된 것은 1910년 9월에 환급되었다.¹⁹⁾ 다른 궁방전과 달리 경선궁은 국유로 인정된 장토도 사유지로 되돌려 받았던 것이다.

1910년 9월을 기준으로 경선궁 장토는 모두 사유지로 환급되었기 때문에 국유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도 『國有地(抄)』에 경선궁과 영친왕궁 장토가 기록된 이유는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가 1사 7궁과 경선궁(영친왕궁 포함) 장토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1908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國有地(抄)』 둔토 「별표」와 궁방전 「별표」의 작성 시기가 달랐고, 황실재정 정리과정에서 역둔토는 택지부 재무감독국이 관할하였고, 궁방전·능원묘위전은 임시재산정리국이 조사·정리하였듯이, 이들 원 자료의 작성 주체도 달랐던 것이다.

둔토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시기가 1914년과 1915년이었듯이 55개 둔토 「별표」의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이었던 보인다.²⁰⁾ 이에 반해 궁방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국유화된 1사 7궁과 경선궁 장토의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임시재산정리국이었던 것이다.

둔토 「별표」·궁방전 「별표」와 달리 능원묘위전 「별표」에서는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이 역시 1908년에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19)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 39~40면.

20) 김재호, 앞의 책, 262면.

〈표-4〉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항목

1	궁방명	郡名	面里名	田畝 斗落 日耕數	結負數	前納入額	前納入者		土地起原	備考
							監官	導掌		
2	廟·陵名	郡名	面里名	田畝 斗落 日耕數	結負數	收入額			起原	備考

* 1: 궁방전 「별표」, 2: 능원묘위전 「별표」.

〈표-4〉의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능원묘위전 「별표」에 납입자인 감관과 도장의 항목이 없는 것 외에는 궁방전 「별표」와 동일하다.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항목이 동일하고, 임시재산정리국의 조사·정리 대상이 궁방전과 大廟基趾 및 陵園墓位田이었듯이, 능원묘위전 「별표」의 원 자료 역시 1908년 임시재산정리국에서 황실 재정을 정리하면서 궁방전과 함께 조사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유화한 황실재정을 조사·정리하기 위해 1908년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작성한 궁방전·능원묘위전의 조사표와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14년과 1915년에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조사표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작성한 것이 『國有地(抄)』였던 것이다.

3. 『國有地調查書(抄)』 궁방전 「별표」의 성격

1907년 2월 1사 7궁을 폐지하면서 설치된 각궁사무정리소는 1사 7궁의 궁방전을 관리하면서 1907년 6월에는 궁방전의 導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궁사무정리소는 도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도장들로 하여금 各宮司에서 하부한 圖書文蹟과 附屬文券, 量案, 秋收記, 監官舍音名簿를 1907년 6월 20일까지 還納하도록 하였다.²¹⁾ 그러나 도장 문권의 첫 환납은 1907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고 9월

21) 『法令集』V, 「宮內府令第1號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件」, 1907.6.5, 513면.

14일에 가서야 문권 환납이 완료되었다. 도장들로부터 문권을 환수하면서 작성한 문서 접수부에 해당하는 장부가 「各宮導掌文券還收簿」(이하 「還收簿」)이다.²²⁾

각궁사무정리소는 6~9월에 걸쳐 도장으로부터 문권을 환수했지만 도장이 문권을 환납하기 전에 이미 도장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다. 『各道郡各穀時價表』에는 「各宮作導掌調查表」(이하 「作導掌表」①)과 「投託導掌調查表」(이하 「投託導掌表」②)가 편철되어 있다.²³⁾ 「作導掌表」①의 표지에 ‘光武十一年六月日’이라고 적혀 있고, 용지의 판심에 ‘各宮事務整理所’가 인쇄되어 있어 각궁사무정리소에서 1907년 6월에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投託導掌表」②의 생산시기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용지의 판심에 ‘各宮事務整理所’가 인쇄된 「作導掌表」①과 동일한 용지를 사용하였고, 작성 방식이 「作導掌表」①과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각궁사무정리소에서 「作導掌表」①을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표-5〉 「作導掌表」①과 「投託導掌表」②의 구성 항목

1	2	3	4	5	6	7	8
郡名	面里名	田畝數量	上納	結數	導掌姓名	導掌住所	宮號

「作導掌表」①에는 도별로 각 군에 소재한 궁방전 및 도장과 관련한 정보가 7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8번째 항목인 ‘宮號’는 「作導掌表」①에 별도의 칸으로 구분되어 기록된 것은 아니었고, 마지막 항목인 ‘導掌住所’ 칸 밖의 아래 여백에 ‘宣’, ‘內’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田畝數量은 궁방전의 지목과 두 락수를 기록한 것이며, 상납은 도장이 궁방에 상납하는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각 궁사무정리소는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이전인 1907년 6월에 이미 각 궁방의 도장 전반을 파악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作導掌表」①과 「投託導掌表」②는 1사 7궁의 궁방전 전반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도장이 差定된 궁방전만을 파악한 것이다. 도장이 차정되지 않았던 궁

22) 『各道郡各穀時價表』(奎 21043) 1·2책, 「各宮導掌文券還收簿」

23) 『各道郡各穀時價表』 1·2책, 「各宮作導掌調查表」, 「投託導掌調查表」

방전의 조사표는 각궁사무정리소가 폐지된 뒤 1908년 1월 각궁사무정리소의 사무 내용을 정리한 『各宮事務整理所事務成蹟調查書』(장서각 12-4880)에서 확인된다. 『各宮事務整理所事務成蹟調查書』에는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 「投託導掌調查表」, 「導掌調查表」 등 4건의 조사표가 편철되어 있다.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의 표지에 ‘隆熙元年九月’이라고 적혀 있어 1907년 9월에 작성된 조사표임을 알 수 있다. 「投託導掌調查表」, 「導掌調查表」는 작성 시기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역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와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장토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는 도장이 차정된 궁방전을 조사한 것이고,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는 그 이외의 궁방전을 파악한 조사표인 것이다.

다음으로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와 『各宮事務整理所事務成蹟調查書』의 「投託導掌調查表」, 「導掌調查表」를 비교해 보면 구성 항목과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구성 항목을 보면 「投託導掌調查表」와 「導掌調查表」에 ‘導掌住所’ 항목이 없는 대신 ‘宮號’ 항목이 설정된 것 외에는 동일했다. 각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도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에 기재된 일부 도장이 「投託導掌調查表」 · 「導掌調查表」에 누락된 것 외에는 일치했다. 「投託導掌調查表」 · 「導掌調查表」는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상 동일한 조사표였던 것이다.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이들 6개의 조사표와 『國有地(抄)』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했다. <표-4>에서 보았듯이 『國有地(抄)』에는 1사 9궁의 궁방전 정보가 각 궁방별로 구분되어 8항목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國有地(抄)』에 감관 성명 및 토지기원 · 비고 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조사표의 항목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國有地(抄)』에 기록된 내용을 6개의 조사표와 비교해 보면 이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했다.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는 『國有地(抄)』에 감관으로 분류된 궁방전의 기록과 동일했고,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는 도장으로 분류된 궁방전의 기록과 동일했다. 「各宮田畝秋收調查表」,

「各宮園林雜稅調查表」는 궁방에서 감관을 파견해 관리한 궁방 직할 장토를 파악한 조사표였고, 「作導掌表」①·「投託導掌表」②는 도장을 차정해 관리한 궁방전의 조사표였던 것이다.

1사 7궁 폐지 후 궁방전을 관리한 각궁사무정리소는 도장을 비롯해 궁방전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며,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궁방 직할 장토의 조사표와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 임시재산정리국이 통합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인 것이다.

임시재산정리국은 기본적으로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궁방전과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작성하였지만 6개의 조사표와 차이도 있었는데, 주된 차이는 건수였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에는 각궁사무정리소가 작성한 조사표보다 186건이 더 많은 667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난 가장 큰 이유는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에는 磨庄되어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와 다른 기관에 이속된 궁방전까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6〉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의 비교²⁴⁾

궁방명	군명	면리명	비고
內需司	漢城	訓鍊院	光武7年 軍部의 練兵場으로 들어갔다
內需司	安山		甲午以後는 取하지 않는다
內需司	懷仁		光武3年 經理院으로 移去했다
明禮宮	慶州	五里坪	지금은 荒廢되었다

24)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의 비교

궁방명	군명	면리명	비고
內需司	漢城	訓鍊院	光武7年 軍部ノ練兵場ニ入ル
內需司	安山		甲午以後ハ取レス
內需司	懷仁		光武3年 經理院ニ移去ル
明禮宮	慶州	五里坪	今ハ荒廢

〈표-6〉은 한성, 안산, 회인 소재 내수사 장토와 경주 소재 명례궁 장토의 비고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國有地(抄)』에는 이들 장토의 비고 항목에 1903년(光武7年) 軍部의 練兵場으로 들어갔다거나 甲午以後부터는 取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데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조사표에는 이들 장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國有地(抄)』에는 각궁사무정리소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장토까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들 장토는 다른 기관에 이속되어 더 이상 궁방전이 아니거나,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였다. 이러한 건수가 186건 가운데 1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수에서 차이가 난 주된 이유는 『國有地(抄)』는 궁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장토를 망라해서 파악한 반면에 각궁사무정리소는 당시 실질적으로 궁방전 역할을 한 장토만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건수에서 차이가 난 또 다른 이유는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에 누락된 궁방전을 추가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각궁사무정리소는 도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1907년 6월 각 궁방의 도장을 파악한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를 작성하였고, 6~9월 사이에 도장으로부터 도장 문권을 환수하면서 「還收簿」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08년 임시재산정리국은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 순서는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1907년 6월) → 「還收簿」(1907년 9월) → 『國有地(抄)』(1908년)가 된다. 그리고 도장을 최종 정리하고 작성한 것이 『臨時財產整理局事務要綱』(1911년 2월: 이하 『요강』)이다.

이들 문서를 비교해 보면 궁방전이 추가로 파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還收簿」 · 『國有地(抄)』 · 『요강』의 도장 비교

궁방명	군명	환수부	국유지초	요강
宣禧宮	坡州	成樂遠	成樂遠	成樂遠
壽進宮	坡州	吳正善	吳正善	吳正善

〈표-7〉에 제시한 도장 成樂遠과 吳正善은 파주군 소재 선희궁·수진궁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아 배상금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還收簿」·『國有地(抄)』·『요강』에는 파주군 소재 선희궁·수진궁 장토와 도장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각궁 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조사표에는 이들 장토와 도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각궁사무정리소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궁방전을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추가로 파악한 것이다.

도장인 성낙원과 오정선으로부터 문권을 환수하면서 누락된 궁방전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추가로 파악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임시재산정리국은 각궁사무정리소가 파악하지 못했던 궁방전을 추가로 파악해 『國有地(抄)』를 작성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전수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²⁵⁾

누락된 궁방전을 추가로 파악했듯이 임시재산정리국은 궁방전의 변동된 상황도 일부 반영해서 『國有地(抄)』를 작성하였다.

25) 임시재산정리국이 궁방전을 추가로 파악해서 전수에 차이가 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조사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궁방전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投托導掌調查表」·「導掌調查表」와 「作導掌表」①·「投託導掌表」②를 비교해 보면 「投托導掌調查表」·「導掌調查表」에는 29건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8건이 수진궁이었다. 각궁사무정리소가 1907년 6월 작성한 「作導掌表」①·「投託導掌表」②를 바탕으로 「投托導掌調查表」·「導掌調查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장이 누락되었던 것이다. 도장조사표는 작성 시기를 달리하는 조사표가 2책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지만, 감관조사표는 1책만이 남아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各宮事務整理所事務成蹟調查書』의 「投托導掌調查表」와 「導掌調查表」에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감관이 파견된 『各宮田畠秋收調查表』의 궁방전을 보면 수진궁 장토가 4건만 기록되어 있었고, 『國有地(抄)』에는 이 외에 13건이 더 기록되어 있었다. 임시재산정리국에서 13건의 궁방전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投托導掌調查表」와 「導掌調查表」에 수진궁 장토가 다수 누락되어 있었듯이 「各宮田畠秋收調查表」도 조사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궁방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표-8〉 궁방전의 도장 변동

궁방	지역	작도장표	환수부	국유지초	요강
壽進宮	延安	申錫孝(韓汝天)	申泰僖	申泰僖	申泰僖
壽進宮	南原	朴台淵	李容彬	李容彬	李容彬
明禮宮	振威	沈奴一男	安貞和	安貞和/徐相薰	安貞和/徐相薰

〈표-8〉에 제시된 도장의 성명을 보면 「還收簿」, 『國有地(抄)』, 『요강』은 일치하지만 「作導掌表」①의 도장만 성명이 다르다. 延安郡 소재 壽進宮 장토의 도장이 1907년 6월에 작성된 「作導掌表」①에는 申錫孝(韓汝天)로 되어 있지만, 「還收簿」, 『國有地(抄)』, 『요강』에는 申泰僖로 되어 있다.

「作導掌表」①에 기대된 申錫孝와 韓汝天은 부부 관계였고, 도장으로 문권을 납부한 申泰僖는 그의 아들이었다.²⁶⁾ 도장들로부터 문권을 환수하기 전에 각궁사무정리소는 해당 장토의 도장을 申錫孝(韓汝天)로 파악했지만, 도장 문권을 환납한 자는 그의 아들 申泰僖였고 도장으로 최종 정리된 자도 신태희였던 것이다. 南原郡 소재 壽進宮 장토의 도장도 朴台淵에서 李容彬으로 변동되었고, 振威郡 소재 明禮宮 장토의 도장도 沈奴一男에서 安貞和로 변동된 사례이다.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전에 각궁사무정리소에서 파악한 도장과 문권을 환납한 도장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임시재산정리국은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國有地(抄)』를 작성했지만, 도장 문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도장의 변동 상황도 일부 반영해서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임시재산정리국은 『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도장의 변동 상황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26) 『導掌決定原案』(奎 21668)

〈표-9〉 궁방전의 도장 변동

궁방	지역	작/투탁도장	『國有地(抄)』	환수부	요강
壽進宮	安岳	崔浩範	崔浩範	朴基弘	朴基弘
景祐宮	長淵	李健赫	李健赫	金時鉉	金時鉉

안악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이 「投託導掌表」②와 『國有地(抄)』에는 崔浩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환수부와 요강에는 朴基弘으로 되어 있다. 이 장토의 도장은 金永達 → 최호범 → 박기홍으로 변경된 경우였다. 김영규에게 도장권을 매득하였던 최호범은 1904년 박기홍에게 도장권을 매도하였다.²⁷⁾ 그래서 각궁사무정리소가 작성한 「投託導掌表」②에는 도장이 최호범으로 되어 있지만, 박기홍이 도장문권을 환납하고 해당 장토의 도장으로 배상을 받았던 것이다.

장연군 소재 경우궁 장토의 도장도 「作導掌表」①에는 이건혁으로 되어 있지만 문권을 환납하고 도장으로 배상을 받았던 자는 김시현이었다. 이 장토의 도장도 趙萬永(趙東完) → 趙重鼎 → 이건혁 → 김시현으로 변경된 사례이다. 조동완은 조만영의 손자로 癸卯年(1903)에 도장권을 조중정에게 방매하였고, 조중정은 이를 이건혁에게, 이건혁은 김시현에게 매도하였다.²⁸⁾ 그래서 「作導掌表」①에는 도장이 이건혁으로 되어 있지만, 도장 문권을 환납하고 배상을 받은 자는 김시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례와 달리 『國有地(抄)』에는 도장의 변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고, 「投託導掌表」②와 「作導掌表」①에 기재된 최호범과 이건혁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作導掌表」① · 「投託導掌表」②와 「還收簿」, 『國有地(抄)』를 비교해 보면, 도장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표-9〉의 사례가 더 일반적이었다. 임시재산정리국은 각궁사무정리소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궁방전의 변동 상황을 일부 반영했지만 모든 장토의 변동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

27) 『導掌決定原案』(奎 21667)

28) 『導掌決定原案』(奎 21019)

니었다.²⁹⁾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기본적으로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궁방전과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 1908년 임시재산정리국이 작성한 문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 정보뿐 아니라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와 아울러 누락된 궁방전까지 추가로 파악하였고,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궁방전 정보까지도 일부 반영해 작성된 궁방전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한 조사표라 할 수 있다.³⁰⁾

그렇지만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변동된 도장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모든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기본적으로는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직전의 도장 양상을 반영한 정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國有地(抄)』의 도장 자료는 「還收簿」과 『요강』 등 도장과 관련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제목에 ‘抄’를 부기하였다. 이 ‘抄’의 의미는 특정 항목에서 일부 내용만을 뽑아 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부에서 국유지와 관련된 특정 항목 곧 둔토·궁방전·농원묘위전의 항목만을 뽑아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國有地(抄)』가 궁방전의 일

29) 『國有地(抄)』에 기록된 도장과 「還收簿」·『요강』에 기록된 도장을 비교했던 김재호는 약 50% 이상에 이르는 도장이 불일치했다고 파악하고, 불일치한 이유를 『國有地(抄)』에 기록된 도장이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查局 단계에서 파악되어 처분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였다(김재호, 앞의 책, 261-262). 이러한 추론은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1915년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한 것에 따른 것이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에 기록된 도장과 「還收簿」·『요강』에 기록된 도장이 50% 이상 불일치한 이유는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에서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전에 작성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와 문권을 환수하면서 작성한 「還收簿」 사이의 변동양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에 기록된 도장은 일부 변동된 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직전의 도장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와 「還收簿」·『요강』의 도장이 불일치한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30) 경선궁 장토는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뿐 아니라 둔토 「별표」에도 일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들 장토는 궁방전 「별표」에 누락되어 있다(조영준, 앞의 책, 374~379면).

부만을 초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듯이,³¹⁾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황실재정이 국유화된 직후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임시재산정리국이 작성한 1사 9궁의 궁방전 전반의 내용을 포괄한 문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조선후기 자료와 연계를 통해 궁방전의 장기 변동, 도장의 변화 및 황실 재정이 국유화될 당시 궁방전의 규모와 운영 등의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4. 맷음말

『國有地(抄)』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둔토·궁방전·능원묘위전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철이다. 그런데 제목에 '抄'라고 부기하였듯이 『國有地(抄)』는 어떤 원 자료로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 모은 문서철이다. 원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필사한 기관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이지만, 『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의 작성 주체와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國有地(抄)』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 문서철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와 작성 주체를 살펴보면 토지 성격별로 작성 시기와 주체가 달랐다. 『國有地(抄)』 둔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시기는 1914년과 1915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임시재산정리국이었다. 황실 재산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임시재산정리국이 국유화된 1사 7궁과 경선궁 장토 및 능원묘위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였던 것이다.

임시재산정리국이 궁방전을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각궁사무정리소에서는 궁방전 전반을 파악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기본적으

31) 김재호, 앞의 책, 261면.

로 각궁사무정리소에서 작성한 궁방전과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 1908년 임시재산 정리국이 작성한 문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 정보뿐 아니라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와 아울러 누락된 궁방전까지 추가로 파악하였고,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궁방전 정보까지도 일부 반영해 작성된 궁방전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한 조사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도장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모든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기본적으로는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직전의 도장 양상을 반영한 정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國有地(抄)』의 도장 자료는 「還收簿」와 『요강』 등 도장과 관련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제목에 ‘抄’를 부기하였다. 이 ‘抄’의 의미는 특정 항목에서 일부 내용만을 뽑아 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부에서 국유지와 관련된 특정 항목 곧 둔토·궁방전·농원묘위전의 항목만을 뽑아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國有地(抄)』가 궁방전의 일부만을 초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듯이,³²⁾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황실재정이 국유화된 직후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임시재산정리국이 작성한 1사 9궁의 궁방전 전반의 내용을 포괄한 문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조선후기 자료와 연계를 통해 궁방전의 장기 변동, 도장의 변화 및 황실 재정이 국유화될 당시 궁방전의 규모와 운영 등의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4. 10. 13), 심사일(2014. 11. 20), 게재확정일(2014. 12. 10)

32) 위의 책, 261면.

참고문헌

- 김재호, 1997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한말 궁방전의 지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박성준, 2008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역사교육』105.
- 이상찬, 1992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15.
- 이윤상, 1996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조영준, 2013 「대한제국기 역둔토 통계와 활용 방안-『國有地調查書(抄)』의 재검토」
(손병규·송양섭편)『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Abstract

The original data and the preparation subject becoming the base of preparation in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Park sung joon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is the document file recording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garrison farm paddy and field · the royal households land,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is the collected document file extrac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rom certain original data as ‘the copy’ is added in the subject.

The period of preparation of original data of garrison farm paddy of 「the attached table」 was 1914 and 1915, the subject of preparation is assumed to be the temporary research bureau if the period and subject of preparation of original data based on the document file concerning the information stated in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On the contrary, 「the attached table」 of the royal households land has been prepared based on the royal households land and stamp investigation paper table prepared in each palace office work arrangement office by the temporary assets arrangement bureau in 1908.

「The attached table」 of the royal households land of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based on this has been understood as the fields and paddies losing the function as the royal households land together with the omitted royal households land as well additionally.

「The attached table」 of the royal households land of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is the document including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oyal households land of 1 temple and 9 palaces prepared by the temporary assets arrangement bureau for the arrangement of finance of the Royal Family immediately after the finance of the Royal Family is nationalized.

But, there is the limit in the point that the understanding of stamp is the information immediately before 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 of stamp is recovered.

Key words : ‘the investigation paper of national land (copy)’, Royal Household lands, dojang(導掌), a temporary Bureau for Property investigation, a Bureau for Royal Household affairs investigation